

2019년도 제2차 이사회(서면결의) 결과

1

회의개요

- ☐ 안건배포일: 2019. 2. 27.(수)
- ☐ 의결서 접수 마감일시: 2019. 2.28.(목) 17:00
- ☐ 장소: 전산망에 의한 서면결의
- ☐ 의결서 제출 이사: 재적이사 22명 중 14명 제출
 - 부회장: 박진우
 - 이 사: 김광섭, 김미향, 김용호, 김종필, 김천중, 김태정, 백원진, 심영식, 유재훈, 이광수, 이동우, 임종훈, 임진영
- ☐ 안건
 - I. 심의사항
 - 1. 정관 개정(안)
 - 2. 규정 제정 및 개정
 - 3. 협회 주최대회 유치지 결정
 - 4. 시도협회/연맹체의 국제·전국대회 개최 승인
 - 5.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가승인
 - 6. 2019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2

심의사항

1. 정관 개정(안)

가. 제안사유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관련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요청 접수
 - 1) 종목육성부-2497 회원종목단체 관련규정 개정 알림(2018.05.03.)
 - 2) 종목육성부-6003 회원종목단체 관련규정 개정 알림(2018.10.10.)
 - 3) 종목육성부-7803 회원종목단체 관련규정 개정 알림(2018.12.21.)
- 2018-제9차 이사회(2018.11.20.) 보고사항 제25호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나. 주요내용

-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주요 추가 또는 변경 내용	비고
임원의 선수 활동 제한	제18조④ 임원은 등록전문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협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할 수 있다.	회원종목단체 규정 준용
회장선거 관련절차 세분화	제19조의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제19조의3(당선인 결정) 제19조의4(기탁금 반환)	회원종목단체 규정 준용
감사 선임 대상자 명확화	제22조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제7조 제1항의 대의 원 중에서 행정감사 1명,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회원종목단체 규정 준용

○ 정관 개정 절차

이사회(검토)→총회(의결)→대한체육회(검토)→문화체육관광부(승인)

다. 서면결의 결과: 원안의결

(재적이사 22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명, 미통보 8명)

2. 규정 제정 및 개정

가. 제안사유

- 대한체육회 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협회 실정에 맞게 일부 규정을 제·개정함.

나. 주요내용

- 배경 및 주요골자

규정	배경 및 주요골자
전국규모연맹체규정	[협회 정관 개정 반영] • 협회 정관 개정 조항을 준용하고 협회의 승인 주체를 명확히 하여 개정함. • 임원의 선수 활동 제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예외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함. 「제18조(임원)④ 임원은 등록전문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연맹 총회의 의결을 거쳐 <u>협회 이사회의 승인</u>을 받아 이를 달리할 수 있다.」
회장선거관리규정	[협회 정관 개정 반영] • 후보자가 1인인 경우 결격사유 등 하자 없을 시 투표 없이 당선인 결정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대한체육회 동 규정 개정이 반영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표준(안) 준용] •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개정 통보 및 동 규정 개정 협조 요청에 따라 개정. • 징계기준 보완, 정비, 공정성 제고

규정	배경 및 주요골자																					
대회승인 및 운영규정	- 타 규정과 용어 정의 통일 - 협회 관계단체(시도회원단체, 전국규모연맹체, 가맹 또는 등록단체) - 대회 승인신청 기간 축소: 현실 반영 (6개월→3개월)																					
경기실적관리 및 발급규정	경기인등록규정 (구,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규정) 개정 에 따른 명칭 변경																					
경기인등록규정	[대한체육회 동 규정 <u>전부개정 반영</u>] - 체육회에서 종전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 을 경기인등록규정으로 전부 개정하여 통보함. - 스포츠 환경 변화 반영, 공정성 및 선수인권 강화, 용어 재 정립 및 선수층에 대한 대회 참가 자격과 신분 보장 등 선 수 등록에 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되었음. - 용어: 경기인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전문선수, 동호인선수) - 등록절차 간소화: 3단계 → 2단계 (시도체육회 승인 생략) - 심판등록 의무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등록비 인상 반영 <table><tr><th>구분</th><th>개정 전</th><th>개정 후</th></tr><tr><td>초등부 (13세이하부)</td><td>면제</td><td>면제</td></tr><tr><td>중등부 (16세이하부)</td><td>면제</td><td>면제</td></tr><tr><td>고등부 (19세이하부)</td><td>40,000원</td><td>60,000원</td></tr><tr><td>대학부</td><td>60,000원</td><td>80,000원</td></tr><tr><td>일반부</td><td>80,000원</td><td>100,000원</td></tr><tr><td>시행</td><td></td><td>2020년부터</td></tr></table> ※참고: 2012년 등록비 도입 후 현재까지 인상 없었음.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초등부 (13세이하부)	면제	면제	중등부 (16세이하부)	면제	면제	고등부 (19세이하부)	40,000원	60,000원	대학부	60,000원	80,000원	일반부	80,000원	100,000원	시행		2020년부터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초등부 (13세이하부)	면제	면제																				
중등부 (16세이하부)	면제	면제																				
고등부 (19세이하부)	40,000원	60,000원																				
대학부	60,000원	80,000원																				
일반부	80,000원	100,000원																				
시행		2020년부터																				
감사규정	대한체육회 감사 지적에 따라 체육회 감사규정을 준용																					

다. 서면결의 결과

- 전국규모연맹체규정 개정 : 원안의결
(재적이사 22명 중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 미통보 8명)
-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 : 원안의결
(재적이사 22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명, 미통보 8명)
- 경기인등록규정 개정 : 원안의결
(재적이사 22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명, 미통보 8명)
-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개정 : 원안의결
(재적이사 22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명, 미통보 8명)
- 대회승인및운영규정 개정 : 원안의결
(재적이사 22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명, 미통보 8명)
- 경기실적관리및발급규정 개정 : 원안의결
(재적이사 22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명, 미통보 8명)
- 감사규정 제정 : 원안의결
(재적이사 22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명, 미통보 8명)

3. 협회 주최대회 유치지 결정

가. 제안사유

- 2019년도 협회 주최 대회의 유치장소를 결정

나. 주요내용

- 유치 신청 접수 내역

대회명	연번	기간	장소	주관	비고
제18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1	3월	경북 포항	경북요트협회	
	2	3월~5월	충남 보령	충남요트협회	
제20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1	4월~5월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	경남요트협회	
제32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요트대회	1	7월	전북 부안	전북요트협회	
제12회 코리아컵국제요트대회 제11회 협회장배전국요트대회	1	-	-	-	울진군으로부터 2019년 코리아컵국제요트대회 개최 불가 알림 공문 접수.(2.26.)
한국매치레이스챔피언십 (해양수산부 후원)	-	11월경	-	-	해양수산부의 지원계획 확정 후 유치 공고예정.

다. 서면결의 결과

- 제18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유치지로 경북 포항시를 선정함.
(재적이사 22명 중 경북 포항시 8명, 충남 보령시 4명, 기권 2명, 미통보 8명)
- 제20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 유치지로 경남 창원시를 선정함.
(재적이사 22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 미통보 8명)
- 제32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요트대회 유치지로 전북 부안군을 선정함.
(재적이사 22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 미통보 8명)

4. 시도협회/연맹체의 국제·전국대회 개최 승인

가. 제안사유

- 시도협회/전국규모연맹체로부터 접수한 국제·전국대회 개최 승인요청에 대한 승인

나. 서면결의 결과

단체명 (시도협회/연맹체)	대회명	서면결의 결과				
		재적	찬성	반대	기권	승인 여부
부산요트협회	2019 아시아세일링워크 (부산슈퍼컵국제요트대회, 한일아리랑레이스)	22	14	0	0	승인
	2019 부산광역시장배전국요트대회	22	14	0	0	승인
경기도요트협회	2019 아라마린페스티벌요트대회	22	14	0	0	승인
경남요트협회	제7회 경상남도지사배전국요트대회	22	14	0	0	승인
	제13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22	14	0	0	승인

단체명 (시도협회/연맹체)	대회명	서면결의 결과				
		재적	찬성	반대	기권	승인 여부
전북요트협회	제5회 새만금컵국제요트대회	22	14	0	0	승인
전남요트협회	제4회 여수시장배 전국요트대회	22	14	0	0	승인
한국레이저 요트협회	제10회 한국레이저요트협회장배 전국요트대회	22	14	0	0	승인
	제2회 한국여자레이디얼선수권 전국요트대회	22	14	0	0	승인
	2019 한강레이저챔피언십 전국요트대회	22	14	0	0	승인
한국J24 요트협회	제1회 코코도르배 전국J24요트대회	22	14	0	0	승인
	2019 한국J24요트협회장배 전국J24요트대회	22	14	0	0	승인

5.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가승인

가. 제안사유

-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사업으로 기본 예산(안)을 작성하고, 추후 예산 확보 시 추진할 사업 및 예산(안)은 별도로 작성함.
- 연간사업계획 및 예산은 서면으로 의결하기 부적당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심의·의결하기로 하고 이번 서면결의로 가승인 하여 협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나. 서면결의 결과 : 원안의결

-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차기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까지 가승인한다.
(재적이사 22명 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명, 미통보 8명)

6. 2019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가. 제안사유

- 정관 개정, 사업결과 및 결산에 대한 사항 등이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개최일시와 장소 및 의결 안건을 확정하여야 함.
- 총회의 기능은 정관 제7조제9항, 감사의 선임은 제22조제6항 참고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동 조항)

나. 주요내용

- 총회 개최 장소 및 일시

구분	개최 일시	개최장소
2019년도 정기대의원총회		서울

- 가능한 신속히 개최하는 것으로 일시 및 장소는 사무처에서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 총회 상정 안건

- 1) 2018년도 정기자체감사 결과
- 2) 2018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 3) 정관 개정
- 4) 감사 선임

다. 서면결의 결과 : 원안의결

(재적이사 22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 미통보 8명)

(끝)